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3,963,132	6,418,894
일반회계	203,097,079	6,092,912
특별회계	10,866,053	325,982
기타특별회계	10,866,053	325,98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7,875	13,13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64,560	13,937
주차장특별회계	8,291,994	248,76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31,013	12,930
기반시설 특별회계	190,611	5,718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1,050,000	31,5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298,64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6 조 금후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 보고한다.